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세부 안전관리 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주체와 위반 시 제재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금액·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나. 지상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관리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다. 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손실보상의 기준·금액,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대통령령 제 호

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4조의2 및 제35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종전의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를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으로, “급유”를 “정비·급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화물·수하물”을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의2(종전의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한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3.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국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50조의3(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0조의4(손실보상 청구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을 행한 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이하 “손실보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기관장은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손실보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

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손실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5(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장은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자가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에 구상권 행사일부터 구상금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법 제31조의2제2항”을 “법 제31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의2 및 제6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

40의2.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

62의2.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의 행사

제57조 중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착륙 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1호	250	400	500
나.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200	300	400
다.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	300	400
라.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제1호	100	150	200
마.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법 제69조 제4항제1호	50	75	100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 하여 사용되도록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제2호	100	150	200	
사. 법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3호	200	300	400	
아.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 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4항제2호	50	75	100	
자.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4호	200	300	400	
차.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 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 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5호	200	300	400	
카.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 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1호	25	35	50	
다.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2호	5	8	10	
파.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 우	법 제69조 제5항제3호	5	8	10	
하.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 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4호	5	8	10	
거. 법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 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 는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5호	5	8	10	
너. 법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69조	12	20	25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제6호			
다. 법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25	35	50
러.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8호	5	8	10
마.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1) 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	200	500
2)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150	300	500
3) 사용료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4) 승인 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경우		250	400	500
바. 법 제36조제1항·제2항·제7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250	400	500
서. 법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변경·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제3호	60	100	200
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제4호	100	150	200
저.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 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250	400	500
차.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	법 제69조	60	100	200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 규정을 변경한 경우	제3항제5호			
커. 공항운영자가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	250	400	500
터. 공항운영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25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50조의3제1항 관련)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한다.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하되,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50조의3제2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기관장이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항공 관련 업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u>규유</u> ,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2. (생략) 3. <u>항공화물·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u> 4. 5. (생략) <u><신 설></u>	제4조의2(항공 관련 업무)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 ----- 정비·급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항공화물 또는 수하물</u> ----- ----- 4.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3(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의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2(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4.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신 설>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한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신 설>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국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50조의3(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 설>

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0조의4(손실보상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을 행한 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이하 “손실보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기관장은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손실보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

<신 설>

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손실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5(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장은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자가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에 구상권 행사일부터 구상금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

별표 1의3-----.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 ----- ----- -----.
1. ~ 39. (생략) <u><신설></u>	1. ~ 39. (현행과 같음) <u>39의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u>
40.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u><신설></u>	40. 법 제31조의3제2항----- ----- ----- ----- <u>40의2.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u>
41. ~ 62. (생략) <u><신설></u>	41. ~ 62. (현행과 같음) <u>62의2.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의 행사</u>
63. ~ 67. (생략) ② ~ ④ (생략)	63. ~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락처	(044) 201 - 4337